

재외동포법 시행 1년, 그리고 재외동포법 개정방향

- ▣ 주최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 일시 : 2000년 11월 28일 (화) 오후 3시 - 5시
-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T. (02)708-4327 F. (02)708-4328 e-mail kin@kin.or.kr 웹 www.kin.or.kr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T. (02)708-4327 F. (02)708-4328 e-mail kin@kin.or.kr 웹 www.kin.or.kr

재외동포법 시행 1년, 그리고 재외동포법 개정방향

▣ 주최 :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 일시 : 2000년 11월 28일 (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층 제1연수실



지구촌동포청년연대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공동대표 양영미 이태호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T. (02)708-4327 F. (02)708-4328 e-mail kin@kin.or.kr 웹 www.kin.or.kr

전체 진행 및 토론 순서

○ 사 회

양 영 미 KIN 공동대표

○ 발 제

이 태 호 KIN 공동대표

이 종 훈 국회연구관, 정치학 박사

○ 토 론

윤 인 진 고려대학교 사회학 교수

김 현 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센터국장

권 영 호 한중동포신문 편집주간

외교부 장관 행사 범포공외지
행방장기 범포공외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가길 10 (남산동1) KIN 한국국제포교총회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전화: 02-3781-1111 (주선) 02-3781-1112 (사무)

팩스: 02-3781-1113 (주선) 02-3781-1114 (사무)

한국국제포교총회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사무총장: 권영호 (02-3781-1111) 사무차장: 이종훈 (02-3781-1112) 대표이사: 양영미 (02-3781-1113) 감사: 김현동 (02-3781-1114) 회계책임자: 권영호 (02-3781-1115) www.kin.or.kr



‘재외동포법에 관한 재외동포 의식조사’
결과 분석 1차 보고서

Survey of the Awareness of the Overseas Korean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Analysis Report I

이 태 호 KIN공동대표

1. 분석보고서	5
2. 재외동포법 설문지(한글)	23
3. Analysis Report I - Survey of the Awareness of the Overseas Korean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26
4. Questionnaire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36

'재외동포법에 관한 재외동포 의식조사' 결과 분석 1차 보고서

2000. 11. 28.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 기획사업팀

1. 조사개요

〈조사목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외동포들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내용〉

- 재외동포법의 인지도
- 재외동포법 상 동포규정의 적정성

〈조사기간〉

2000. 7. 1. - 2000. 11. 15

〈조사방법〉

면접 및 우편발송을 통한 조사

〈조사방법의 한계〉

- 샘플규모의 한계 : 샘플 330명은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샘플의 수에는 못 미침
- 샘플선정의 한계 : 국적별, 거주국별, 직업별, 계층별, 연령별 통계에 기초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택하지 않고 면접 및 우편발송이 가능한 '재외동포'에 한함

〈조사대상〉

- 미국, 일본, 중국, 독일 거주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대한민국 거주 외국국적 동포
- 총 330명

거주지별	Frequency	%	Valid%
Valid 한국	101	30.6	31.1
미국	61	18.5	18.8
일본	29	8.8	8.9
영국	88	26.7	27.1
독일	46	13.9	14.2
total	325	98.5	100.0
Missing	5	1.5	
Total	330	100.0	

국적별	Frequency	%	Valid%
Valid 미국	34	10.3	11.5
일본	2	0.6	0.7
조선적	5	1.5	1.7
중국	182	55.1	61.3
독일	23	7.0	7.7
대한민국	50	15.2	16.8
기타	1	0.3	0.3
total	297	90.0	100.0
Missing	33	10.0	
Total	330	100.0	

이주세대별	Frequency	%	Valid%
Valid 1세	47	14.2	17.6
1.5세	32	9.7	12.0
2세	130	39.4	48.7
3세	53	16.1	19.9
기타	5	1.5	1.9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연령별	Frequency	%	Valid%
Valid 10대	11	3.3	3.8
20대	58	17.6	19.8
30대	62	18.8	21.2
40대	84	25.5	28.7
50대	60	18.2	20.5
60대 이상	18	5.5	6.1
total	293	88.8	100.0
Missing	37	11.2	
Total	330	100.0	

학력별	Frequency	%	Valid%
Valid 중졸	68	20.6	25.5
고졸	123	37.3	46.1
대졸	50	15.2	18.7
대학원졸	14	4.2	5.2
기타	12	3.6	4.5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성별	Frequency	%	Valid%
Valid 여자	128	38.8	45.2
남자	155	47.0	54.8
total	283	85.8	100
Missing	47	14.2	
Total	330	100.0	

2. 설문 분석

(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

(질문1) 재외동포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Frequency	%	Valid%
Valid 인다	221	67.0	68.0
모른다	104	31.5	32.0
total	325	98.5	1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응답자의 67%(221명)이 알고 있다고 답해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중국이 100%(88명 응답), 한국 거주자가 76.3%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일본 (72.4%), 미국 (36.7%), 독일 (23.9%) 순으로 인지도 편차를 보였다. 한국거주 외국국적자의 94%가 중국동포임을 감안하면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법 제정사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88.3%, 조선적 75.0%, 일본국적 50%, 대한민국 60%, 미국 48.5%, 독일 34.8% 순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재중동포, 재일동포(대한민국국적 취득자 제외) 사이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실제 적용대상인 미국과 독일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세대별로는 2세(88.9%), 3세(88.7%)가 가장 잘 알고 있었고 1.5세가 71.9%, 4세이상 60%, 1세가 47.8%순의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84.5%, 30대 83.9%, 40대 73.2%로 3-50대의 연령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20대 69.0%, 60대 이상 66.7%, 10대 27.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과 노년층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남성 80.3%, 여성 70.9%로 남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98.5%, 대학원졸 78.6%, 고졸 78.3%, 대졸 78.6%로 학력에 따른 뚜렷한 경향은 발견되지 않는다. 중졸 학력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재중동포들의 학력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 재외동포법 동포 규정 인지도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규정에 대해 60.3%가 안다고 응답했고 36.7%가 모른다고 대답해 상당한 인지도를 보였다.

(질문2)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던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재중동포 조선족, 구소련동포 고려인, 무국적 재일동포(조선적) 및 일본국적 취득 재일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과거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대다수 해외동포와 그 직계가족들을 법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Frequency	%	Valid%
Valid 인다	199	60.3	62.2
모른다	121	36.7	37.8
total	320	97.0	100.0
Missing 0	10	3.0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중국 100%, 한국 62.6%, 일본 58.6%, 미국 34.4%, 독일 23.9%의 순으로 중국과 일본이 역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83.3%, 일본-조선적 50%, 대한민국 44.0%, 미국 38.2%, 독일 30.4% 순으로 같다.

이주세대별로는 2세 84.6%, 3세 76.9%, 1.5세 45.2%, 1세 44.7%의 인지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82.0%, 50대 78.0%, 40대 62.3%, 20대 53.4%, 10대 27.2%의 인지도 편차를 보였다.

성별 인지도는 남성 70.5%, 여성 64.3%로 남성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력별로 뚜렷한 편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재외동포법 적용대상 여부

(질문3) 당신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응답자의 33.7%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자라고 응답했고 45.6%가 아니라고 응답했으며 20.7%가 모르겠다고 답했으나 사실과는 매우 다른 응답이어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실질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드러내고 있다.

	Frequency	%	Valid%
Valid 그렇다	111	33.6	33.7
아니다	150	36.7	45.6
잘 모름	68	20.6	20.7
total	329	99.7	100.0
Missing 0	1	0.3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보면 우선 대다수가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라 할 수 있는 미국거주자 중 36.1%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63.9%가 자신은 대상자가 아니거나(31.1%) 잘 모르겠다(32.8)고 대답하여 미국 거주자들은 자신의 적용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거주자들의 34.8%만이 자신이 대상자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65.3%가 대상자가 아니거나(28.3%), 잘 모르겠다(37.0%)고 밝혀 역시 대다수가 실제적용대상자인 것과는 상반되는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요컨대 적용대상자들도 자신이 적용대상자인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거주자는 69%가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응답했고 20.7%가 아니다, 10.3%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일본거주자 중 대상자가 많은 것은 응답자의 상당수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거주자는 100%가 자신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나 대다수가 중국동포인 한국거주자들의 20%만이 자신이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밝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샘플에 의하지 않은 면접조사의 한계를 염두에 둘 때, 중국현지 조사대상자들이 사전 인지도가 높은 조

직화된 집단임을 추측케 한다. 대다수가 중국국적자인 한국거주 외국국적자(조사대상 101명 중 94명이 중국국적자)의 52%는 자신이 적용대상자라고 응답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세대별, 연령별, 성별로는 주목할만한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생의 100%(14명)가 자신이 적용대상이라고 대답했고, 대졸자의 38%(19명), 고졸자의 33.6%(41명), 중졸자의 16.2%가 적용대상자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응답에는 중졸 75.0%(51명), 고졸 48.4%(22명), 대졸 28.0%(14명)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추측을 해볼만하다.

(4) 재외동포 규정의 적정성 판단

(질문4)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12%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적절 5.2%, 적절하다 6.8%),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7%로 나타났다.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적절	17	5.2	5.2
적절	22	6.7	6.8
부당	56	17.0	17.2
매우 부당	179	54.2	55.1
잘 모름	51	15.5	15.7
total	325	98.5	10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국 1.1%, 독일 2.2%, 일본 3.4%, 미국 11.7%, 한국 29.9%로 나타났고, '부당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국 98.9%, 독일 80.4%, 일본 79.3%, 미국 56.7%, 한국 50.5%로 나타났다. 미국 거주자들 중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미국 응답자들 중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1.7%로 평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중국 76%, 독일 73.9%, 미국 67.7%, 대한민국 61.2%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 62.2%, 1.5세 64.5%, 2세 78.9%, 3세 82.7% 순으로 나타나 2세 3세로 갈 수록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부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0대 54.6%, 20대 81%, 30대 80.4%, 40대 65.4%, 50대 79.7%, 60대 이상 50% 등 10대와 60대 이상 층에서 부당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았다. 10대의 36.4%, 60대 이상의 27.8%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학력별로는 중졸 80.6%, 고졸 71%, 대졸 69.4%, 대학원졸 7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5) 재외동포 규정의 차별성 여부

(질문5) 위와 같은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다. 차별적이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4%,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0%)에 지나지 않았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9.6%로 나타났다.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차별	205	62.1	63.7
차별	73	22.1	22.7
별로 차별안함	13	3.9	4.0
전혀 차별안함	0	0	0
잘 모름	31	9.4	9.6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차별적이라는 응답은 중국 100%, 한국 85.2%, 독일 84.8%, 일본 82.2%, 미국 70.5% 순으로 나타났고, 차별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미국 13.1%, 한국 4.3%, 일본 3.6% 순으로 나타나 미국거주자들 중 차별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적별로는 차별적이라는 응답자가 중국 93.1%, 독일 78.3%, 대한민국 77.5%, 미국 70.6%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 63.7%, 20대 88%, 30대 88.4%, 40대 90.1%, 50대, 88.2%, 60대이상 83.3%로 10대들이 차별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 68.1%, 1.5세 87.6%, 2세 93.5%, 3세 92.3%, 기타 80%로 1세들이 비교적 차별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중졸 97.1%, 고졸 86.5%, 대졸 77.5%, 대학원졸 84.6%로 나타났다. 성별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6) 혈통주의로 개념확대의 필요성

(질문6)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이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였던 자"에서 "한민족 혈통의 외국국적자와 그 직계가족(혈통주의)"으로 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찬성	210	63.6	64.8
찬성	59	17.9	18.2
반대	14	4.2	4.3
매우 반대	10	3.0	3.1
잘 모름	31	9.4	9.6
total	324	98.2	100.0
Missing 0	6	1.8	
Total	330	100.0	

거주지별로는 중국 95.4%, 독일 91.1%, 한국 81.4%, 일본 72.4%, 미국 66.6%의 순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반대는 미국 20%, 일본 10.3%, 중국 4.5%, 독일 4.4%, 한국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다.

연령별로는 찬성의 비율이 60대 이상 94.1%, 50대 90.0%, 40대 80.5%, 30대 82.3%, 20대 80.7%, 10대 63.7% 순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혈통주의에 대한 찬성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로는 1세 63%, 1.5세 81.3%, 2세 91.4%, 3세 77.4%, 기타 80%로 나타나 1.5세-2세가 가장 찬성율이 높고 1세와 3세에서 찬성율이 낮아지고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92.7%, 고졸 78.3%, 대졸 77.5%, 대학원졸 88.6%로 나타났다. **성별**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견해

(질문7) 외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은 혈통주의에 따라 화교에 대한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1.6%

강대국의 횡포이지만 힘이 약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2.8%,

조선족 동포 유입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므로 설득력이 있다는 응답이 9.5%,

중국도 화교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0.9%,

기타 5.1%로 나타났다.

	Frequency	%	Valid%
Valid 어쩔 수 없다.	9	2.7	2.8
중국이 반대해도 추진해야	258	78.2	81.6
나름대로 설득력 있다.	30	9.1	9.5
중국도 화교정책 중단해야	3	0.9	0.9
기타	16	4.8	5.1
total	316	95.8	100.0
Missing 0	14	4.2	
Total	330	100.0	

거주국별로는 중국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비율이 독일 97.7%, 중국 96.6%, 한국 80.2%, 미국 66.1%, 일본 4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중국 거주자들에게서 높은 비율의 응답이 나온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응답율은 낮다.

국적별로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견해가 독일 100%, 중국 89%, 미국 75%, 대한민국 58%순이다. 조선족 유입의 우려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진다는 견해를 피력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22%로 평균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 국적 재외동포가 주로 재일동포라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거주국별 분석에서도 재일동포들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독일과 미국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인 심한 일본사회의 현실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추측도 해볼만 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70%, 20대가 70.7%, 30대가 91.4%, 40대가 82.5%, 50대가 86.7%, 60대 이상이 82.4% 등으로 10대, 20대에서 외교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 편차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88.2%, 고졸 85.1%, 대졸 75.5%, 대학원졸 46.2%. 학력이 높을수록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15.1%가 어쩔 수 없다, 23.1%가 기타 란에 표시했다. **성별**편차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8)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 여부

(질문8) 재일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은 조선적(무국적)으로 표기되어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85.1%, 반대 4.6%, 잘 모르겠다 10.4%

	Frequency	%	Valid%
Valid 찬성	279	84.5	85.1
반대	15	4.5	4.6
잘 모름	34	10.3	10.4
total	328	99.4	100.0
Missing 0	2	0.6	
Total	330	100.0	

거주국별 찬성비율은 독일 100%, 중국 96.6%, 일본 86.2%, 한국 75.8%, 미국 7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찬성비율은 독일 100%, 중국 86.6%, 대한민국 79.6%, 미국 73.5%, 조선적 60%, 일본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인 조선적과 일본국적 동포들의 찬성비율이 낮은 것은 조선적의 자유왕래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곤란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적 재일동포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총련은 조선적 동포들의 남한 자유왕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주세대별 찬성비율은 1세가 72.3%, 1.5세가 87.5%, 2세가 88.4%, 3세가 80.0%로 이주 1세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주 1세대가 이념적인 문제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연령별 찬성비율은 10대가 90.9%, 20대가 87.7%, 30대가 82.3%, 40대가 80.7%, 50대가 91.7%, 60대 이상이 83.3%로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높은 가운데서도 3-40대가 비교적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질문과는 달리 3-40대의 찬성비율이 낮은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학력별 찬성률은 중졸 95.6%, 고졸 77.9%, 대졸 83.7%, 대학원졸 92.9%로 중졸학력자를 제외하고는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높다. 중졸자 중 찬성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중 상당수

가 민족적 성향이 강한 중국동포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9) 조선족 대거 유입에 대하여

(질문9) 재외동포법이 재중동포에게도 적용될 경우, 재중동포(조선족)들의 대거 유입이 우려되므로 재외동포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requency	%	Valid%
Valid 우려 당연	18	5.5	5.7
고른 혜택부여	182	55.2	57.8
조절장치 마련	103	31.2	32.7
법 폐기 후 예전체제로	3	0.9	1.0
기타	9	2.7	2.9
total	315	95.5	100.0
Missing 0	15	4.5	
Total	330	100.0	

응답자 중 90.5%가 재외동포법에 재중동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재중동포들의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거나 별도의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적 동포들의 대거유입은 한국경제, 한중관계에 큰 문제이므로 당연하다 5.7%,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 유입되더라도 동포들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57.8%, 법은 모든 동포들이 포함되도록 제정하되 법외의 대거유입 조절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32.7%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예전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1.0%, 기타 2.9%

거주국별로는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 95.4%, 한국 47.8%, 미국 43.3%, 독일 38.6%, 일본 34.5%로 중국거주자와 다른 나라 거주자간에 커다란 인식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적용대상은 모든 동포를 포함시키되 조절장치를 모

색해야 한다'는 견해는 독일 61.4%, 미국 41.7%, 일본 41.4%, 한국 38.9%, 중국 3.4% 등 역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대거유입에도 불구하고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 71.9%, 독일 42.9%, 대한민국 42.0%, 미국 36.4% 순으로 중국국적자와 다른 국적자의 인식 차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중국국적자의 응답비율(71.9%)이 중국거주자(95.4%)의 응답비율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와 중국에 있는 중국동포의 인식격차를 보여줘 흥미롭다.

연령별로는 '고른 혜택부여'가 10대 27.3%, 20대 56.9%, 30대 58.6%, 40대 56.3%, 50대 71.7%, 60대 58.8%로 연령이 높을수록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절장치 필요'는 10대 45.5%, 20대 34.5%, 30대 34.5%, 40대 32.5%, 50대 18.3%, 60대이상 29.4%로 역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평등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는 편차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주세대별로는 '고른 혜택부여'의 비율이 1세 53.3%, 1.5세 44.8%, 2세 70.2%, 3세 60.4%로 1세, 1.5세에 비해 2세, 3세의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다. 법은 평등하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편차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른 혜택부여'가 중졸 86.6%, 고졸 59.6%, 대졸 38.8%, 대학원졸 42.9%, '조절장치 모색'이 중졸 7.5%, 고졸 28.9%, 대졸 46.9%, 대학원졸 42.9%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조절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른혜택" 지지와 대등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고른혜택'이 여성 66.1%, 남성 55.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

(질문10)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들의 출입국이나 법적 지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찬성하는 입장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 (32.9%)과 잘 모르겠다 (15.2%)는 입장도 적지 않다.

매우찬성 30.7%, 찬성 21.1%, 반대 23.3%, 매우반대 9.6%, 잘 모르겠다 15.2%

	Frequency	%	Valid%
Valid 매우 찬성	99	30.0	30.7
찬성	68	20.6	21.1
반대	75	22.7	23.3
매우 반대	31	9.4	9.6
잘 모름	49	14.8	15.2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거주국별 찬성율은 일본89.3%, 독일 79.5%, 미국 67.2%, 한국 61.5%, 중국 5.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찬성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중국동포들이 자신과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율 역시 극단적 편차를 보여준다. 중국 89.8%(매우 반대 19.3%), 한국 15.6%(매우반대 7.3%), 독일 9.1%(매우 반대 6.8%), 미국 6.6% (매우반대 3.3%), 일본 3.6%(매우 반대 0%).

국적별 찬성율은 대한민국 78%, 독일 71.4%, 미국 64.7%, 중국 32% 순이다. 중국국적자의 찬성율이 거주국별 찬성율에 비해 현격히 높아진 것은 중국국적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국거주 중국동포'의 높은 찬성율(약 65%로 추정)에 기인한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거주 응답자의 94%가 중국국적자이다.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 변화의 원인이라 추정된다.

이주세대별, 연령별, 성별 응답에는 뚜렷한 편차나 경향을 찾을 수 없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22.8%, 고졸 33.7%, 대졸 68%, 대학원졸 8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질문11)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선거권/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불필요(15.1%), 잘 모름(15.4%)

	Frequency	%	Valid%
Valid 필요	221	67.0	69.5
불필요	48	14.5	15.1
잘 모름	49	14.8	15.4
total	318	96.4	100.0
Missing 0	12	3.6	
Total	330	100.0	

거주국별 찬성율은 중국 98.9%, 독일 93.3%, 한국 59.1%, 일본 48.3%, 미국 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독일 거주자들의 찬성율이 현저하게 높다. 반대율은 미국 44.8%, 일본 24.1%, 한국 11.8%, 독일 6.7%, 중국 0% 순이다. 미국의 경우, 찬성률보다 반대율이 높다.

국적별 찬성율은 독일 86.4%, 중국 80.7%, 대한민국 42.9%, 미국 25.8% 순으로 나라별 편차가 크다. '불필요 또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미국 74.2%(불필요 38.7%), 대한민국 57.2%(불필요 38.8%), 중국 19.4%(불필요 13.1%), 독일 13.6%(불필요 13.6%) 순이다.

연령별 찬성율은 10대 54.5%, 20대 56.1%, 30대 68.3%, 40대 71.8%, 50대 81.4%, 60대 이상 7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권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 찬성률은 1세 48.8%, 1.5세 43.2%, 2세 80.0%, 3세 66.7%로 2세와 3세에서 요구가 강했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89.6%, 고졸 71.3%, 대졸 37.5%, 대학원졸 3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권 부여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혹은 모르겠다' 응답의 경우, 대학원졸 64.3%(불필요 25%), 대졸 62.5%(불필요 39.6%), 고졸 28.7%(불필요 13.0%), 중졸 10.5%(불필요 4.5%). 성별 편차는 없었다.

3. 종합분석

재외동포법 제정 및 시행사실,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규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67%, 60.3%가 안다고 응답했으나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나 독일 거주자의 60% 이상이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등 실질적인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의 동포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으며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 재외동포들 중 적절하며 차별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재외동포법이 주로 미국거주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성안되었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의 반대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1.6%, 조선족의 대거유입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재외동포법에서 중국동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90.5%가 반대했다. 단 재중동포의 대거유입을 조절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도 32.7%가 나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적(무국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에도 85.1%가 찬성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 권리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32.9%)과 잘 모르겠다(15.2%)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및 법적 지위의 개선에 대해 매우 배타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주로 재중동포, 재독동포에 편중된 견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재외동포법」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 199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귀국법' (이하 '재외동포법'으로 표시함)의 서울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재외동포법'의 서울시 조례안 제정시 중요한 자료로 쓰이며 본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I. 다음은 '재외동포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법'이 제정되고, 시행(1999. 12. 3)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나누고,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던 자 및 그 직계가족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재중동포 조선족, 구소련동포 고려인, 무국적재일동포(조선적) 및 일본국적 취득 재일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 과거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던 대다수 해외동포와 그 직계가족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3. 당신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4.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를 위와 같이 정의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 ② 적절한 편 ③ 부당한 편 ④ 매우 부당 ⑤ 잘 모르겠다
5. 위와 같은 '재외동포법'의 동포규정이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차별적 ② 차별적인 편이다 ③ 별로 차별적이지 않다 ④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6. 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이들도 재외동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을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던 자'에서 '한민족 혈통의 외국국적 소지자와 그 직계가족(혈통주의)'으로 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7. 외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혈통주의적 재외동포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힘들다고 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은 혈통주의에 따라 화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강대국의 횡포이지만 힘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
②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③ 조선족동포의 유입은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이므로 설득력이 있다.
④ 중국도 화교지원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⑤ 기타

8. 재일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은 조선적(무국적)으로 표기되어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③ 잘 모르겠다

9. '재외동포법'이 재중동포에게도 적용될 경우, 재중동포 조선족들의 대거 유입이 우려되므로 재외동포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조선족 동포들의 대거유입은 한국경제, 한중관계에 큰 문제이므로 당연하다.
② 조선족 동포들이 대거유입 되더라도 동포들에게 고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③ 법은 모든 동포들이 포함되도록 제정하되 법 외의 대거유입 조절장치를 모색해야 한다.
④ '재외동포법'을 폐지하고 예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낫겠다.
⑤ 기타 ()

10.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른 외국인들의 출입국이나 법적 지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은?

-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한다 ⑤ 잘 모르겠다

11. 재외동포에게 대한민국 선거권 /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II. 다음은 통계를 위한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독일 ⑤ 러시아 ⑥ 조선적 ⑦ 대한민국 ⑧ 기타 ()

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4. 귀하는 이주 몇 세대입니까?

① 1세 ② 1.5세 ③ 2세 ④ 3세 ⑤ 기타 ()

5.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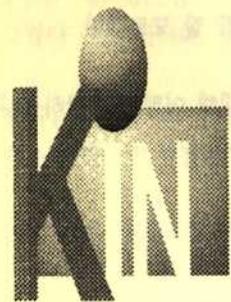
6. 귀하의 현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은?

① 5년 이내 ② 10년 이내 ③ 15년 이내 ④ 20년 이내 ⑤ 25년 이내 ⑥ 기타 ()년

7.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중졸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⑤ 기타 ()

- 설문에 응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전화 +82-2-708-4327 ■ 팩스, +82-2-708-4328
- 웹사이트 www.kin.or.kr ■ 이메일 kin@kin.or.kr
- 주소 (110-741)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5호

Survey of the Awareness of the Overseas Korean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Analysis Report I

2000. 11. 28.

KIN(Korean International Network)

1. Summary of the Survey

〈Objectives〉

To survey the degree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amongst overseas Koreans concerning the Act regarding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Overseas Koreans Act) and to seek a positive direction for improvement

〈Content of the Survey〉

- Awarenes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by the Overseas Koreans Act

〈Duration of the Survey〉

2000. 7. 1. - 2000. 11. 15

〈Method〉

Interview and/or mail correspondence

〈Limitations of the Method〉

- Limitation of the Sample Size : The sample size of 330 respondents is not enough for an objective analysis

○ Limitation of the Sample Selection : The sample was not selected randomly based on statistics by nationality, resident country, occupation, status, age, etc. but selected for those 'overseas Koreans' who could be interviewed or exchange mail

<Survey Subject>

○ Overseas Koreans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residing in the US, Japan, China, Germany and South Korea

○ 330 people

Residency	Frequency	%	Valid%
Valid South Korea	101	30.6	31.1
US	61	18.5	18.8
Japan	29	8.8	8.9
China	88	26.7	27.1
Germany	46	13.9	14.2
total	325	98.5	100.0
Missing	5	1.5	
Total	330	100.0	

Nationality	Frequency	%	Valid%
Valid US	34	10.3	11.5
Japan	2	0.6	0.7
Joseon-jeok	5	1.5	1.7
China	182	55.1	61.3
Germany	23	7.0	7.7
RCK	50	15.2	16.8
Others	1	0.3	0.3
total	297	90.0	100.0
Missing	33	10.0	
Total	330	100.0	

Immigrant Generation	Frequency	%	Valid%
Valid 1	47	14.2	17.6
1.5	32	9.7	12.0
2	130	39.4	48.7
3	53	16.1	19.9
Others	5	1.5	1.9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Age	Frequency	%	Valid%
Valid 10s	11	3.3	3.8
20s	58	17.6	19.8
30s	62	18.8	21.2
40s	84	25.5	28.7
50s	60	18.2	20.5
60s and over	18	5.5	6.1
total	293	88.8	100.0
Missing	37	11.2	
Total	330	100.0	

Education	Frequency	%	Valid%
Valid Middle	68	20.6	25.5
High	123	37.3	46.1
College	50	15.2	18.7
Graduate	14	4.2	5.2
Others	12	3.6	4.5
total	267	80.9	100.0
Missing	63	19.1	
Total	330	100.0	

Sex	Frequency	%	Valid%
Valid Female	128	38.8	45.2
Male	155	47.0	54.8
total	283	85.8	100
Missing	47	14.2	
Total	330	100.0	

2. Analysis of the Survey

(1) Awareness of the Overseas Koreans Act

(Q 1)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3, 1999) in the Republic of Korea?

	Frequency	%	Valid%
Valid Yes	221	67.0	68.0
No	104	31.5	32.0
total	325	98.5	1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2) Awareness of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Q 2)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Overseas Koreans Act, Overseas Koreans are distinguished as Overseas Korean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the latter term including those who once had ROK nationality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a person and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nd of the fact that Joseon-jok Koreans in China (Korean Chinese), Koryo-in Koreans in Russia (Korean Russians), Joseon-jeok Koreans in Japan with no nationality, Koreans in Japan who have acquired Japanese nationality, and others who previously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and did not acquire ROK nationality, which includes the great majority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in fact ex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law and its benefits?

	Frequency	%	Valid%
Valid Yes	199	60.3	62.2
No	121	36.7	37.8
total	320	97.0	100.0
Missing 0	10	3.0	
Total	330	100.0	

(3) Application of the Act

(Q 3) Does the OKA apply to you?

	Frequency	%	Valid%
Valid Yes	111	33.6	33.7
No	150	36.7	45.6
Not Sure	68	20.6	20.7
total	329	99.7	100.0
Missing 0	1	0.3	
Total	330	100.0	

(4) Appropriateness of the Definition

(Q 4) Do you think the passag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bove is adequate for defining what an Overseas Korean is in a fair manner?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17	5.2	5.2
Appropriate	22	6.7	6.8
Not	56	17.0	17.2
Very Much Not	179	54.2	55.1
Not Sure	51	15.5	15.7
total	325	98.5	100.0
Missing 0	5	1.5	
Total	330	100.0	

(5) Discriminatory Definition

(Q 5) Do you think that the abov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in the Overseas Koreans Act discriminates against Overseas Koreans?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205	62.1	63.7
Discriminatory	73	22.1	22.7
Not much	13	3.9	4.0
Not discriminatory	0	0	0
Not Sure	31	9.4	9.6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6) Hereditary Principle

(Q 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uggestion that in order for those who emigrated from Korea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to be considered as Overseas Koreans, the Overseas Koreans Act must be amended from "those who held ROK nationality in the past" to "those possessing foreign nationality who are of Korean ethnicity and descent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people (hereditary principle)?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210	63.6	64.8
Yes	59	17.9	18.2
No	14	4.2	4.3
Very Much	10	3.0	3.1
Not Sure	31	9.4	9.6
total	324	98.2	100.0
Missing 0	6	1.8	
Total	330	100.0	

(7) Diplomatic tension with China

(Q 7)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ays that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law because China would be against ROK's Overseas Korean policy based on the hereditary principle. Do you think this is reasonable?

	Frequency	%	Valid%
Valid Cannot help	9	2.7	2.8
Change despite opposition	258	78.2	81.6
Opposition is reasonable	30	9.1	9.5
China must stop its policy	3	0.9	0.9
Others	16	4.8	5.1
total	316	95.8	100.0
Missing 0	14	4.2	
Total	330	100.0	

(8) Allowing the Entry of Chosun-Jeok Koreans in Japan

(Q 8) Koreans in Japan who do not possess neither ROK nor Japanese nationality and are declared to be Joseon-jeok (no nationality), are suffering under various forms of discrimination. Also, they are under restrictions when entering the ROK. What is your opinion on allowing Joseon-jeok Koreans in Japan to enter the ROK?

	Frequency	%	Valid%
Valid Yes	279	84.5	85.1
No	15	4.5	4.6
Not Sure	34	10.3	10.4
total	328	99.4	100.0
Missing 0	2	0.6	
Total	330	100.0	

(9) Mass Influx of Joseon-Jok

(Q 9) What do you think about the fact that some people have the opinion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cannot be made to include Korean Chinese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it would lead to a large scale influx of Joseon-jok Korean Chinese?

	Frequency	%	Valid%
Valid Concerned	18	5.5	5.7
Equal Treatment	182	55.2	57.8
Control Mechanism	103	31.2	32.7
Old System	3	0.9	1.0
기타	9	2.7	2.9
total	315	95.5	100.0
Missing 0	15	4.5	
Total	330	100.0	

(10) Equal Treatment to Foreigners

(Q 10) Some have the opinion that in the instance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were enacted, with consideration to equal treatment,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ther foreigners would have to be improve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Frequency	%	Valid%
Valid Very Much	99	30.0	30.7
Yes	68	20.6	21.1
No	75	22.7	23.3
Very Much	31	9.4	9.6
Not Sure	49	14.8	15.2
total	322	97.6	100.0
Missing 0	8	2.4	
Total	330	100.0	

(11) Right to Vote

(Q 11) What do you think about the opinion that Overseas Koreans must be guaranteed the right to vote and eligibility to run for office?

	Frequency	%	Valid%
Valid Yes	221	67.0	69.5
No	48	14.5	15.1
Not Sure	49	14.8	15.4
total	318	96.4	100.0
Missing 0	12	3.6	
Total	330	100.0	

3. Overall Analysis

While 67%, 60.3% answered Yes and No, respectively, to the question of knowing about the facts of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hereafter OKA) and the OKA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the actual degree of awareness was very low as 60% or higher of the respondents from the US and Germany answered that they did not know whether the OKA applied to them.

On the current OKA definition which adopted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72.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t was unfair (unfair 17.2%, very unfair 55.1%), 86.4% of the respondent answered that it was discriminatory (very discriminatory 63.7%, discriminatory 22.7%), and 83.0%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definition should adopt the hereditary principle. However, the number of respondents with USA nationality or USA residency who have answered "appropriate" or "not discriminator" was higher than the one from other countries. This is once again to remind us that the OKA was made with Korean Americans in mind.

On the question related to China's opposition, 81.6% of the respondents showed the opinion that the OKA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all overseas Koreans. 90.5% was

concerned about the mass influx of Joseon-jok Chinese and answered to exclude them from the OKA. However, a substantial 32.7% answered that there should be a control mechanism to prevent a mass influx. On the question of allowing entry of Joseon-jeok Koreans in Japan, 85.1% agreed.

51.8% agreed to the position that foreigners legal status and immigration rights should also be improved reaching a majority. However, the opposed was 32.9% and 15.2% said "not sure."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Joseon-jok Chinese had a very exclusive opinion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and immigration procedures for foreigners.

69.5% agreed to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to office for overseas Koreans reaching well over a majority, but is heavily concentrated on Korean Chinese and Korean Germans.

Questionnaires On the "Overseas Koreans Act"

Thank you very much for taking your time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This questionnaire is part of the preliminary work in preparation for the Seoul municipal ordinance of the Act Regarding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Overseas Koreans Act) which have been in effect since December of 1999. The results of these questions will be used as important data in the enactment of the Seoul municipal ordinanc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will not be used outside of this purpose.

I. The following are questions related to the Overseas Koreans Act.

1.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enacted and has been in force (since December 3, 1999) in the Republic of Korea?
 - a. I am aware of this fact
 - b. I am unaware
2.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Overseas Koreans Act, Overseas Koreans are distinguished as Overseas Korean and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the latter term including those who once had ROK nationality and those who are family members of such a person and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as determined by Presidential Order, and of the fact that Joseon-jok Koreans in China (Korean Chinese), Koryo-in Koreans in Russia (Korean Russians), Joseon-jeok Koreans in Japan with no nationality, Koreans in Japan who have acquired Japanese nationality, and others who previously emigrated to other countrie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government and did not acquire ROK nationality, which includes the great majority of overseas Korean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in fact excluded in the application of this law and its benefits?
 - a. I am aware of these facts
 - b. I am unaware
3. Do you fall under the applic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 a. Yes
 - b. No
 - c. I am not sure
4. Do you think the passage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bove is adequate for defining what an Overseas Korean is in a fair manner?

유연권
 대안적인 강령서안

함께: 동

대중상 제1등도 방 know best 생각 x

제1등 이해가 안돼 결론이 상반돼 ↑ 이해

○ 중요한 아라는 리얼라이즈 배려

↓
 극복 방안?

○ 선배랑 선배

○ 연구방향이 선배랑 → 리얼리즘 · 리얼리즘 주장하려면
필수 극소 / → 현실적인 리얼리즘

○ 국민들의 의사수렴 역시 악마야 한다.
 리얼리즘 배려 · 수용

○ 수사의 리얼리즘 (나)

○ 리얼리즘 자체 → 극소 (극복하려면 how!)

○ 리얼리즘이 의사수렴 → 정당의 수렴이 중요
 한국내

○ 제1등의 이미지

- 제비 - 사기꾼,
- 제비 - 양고기, 사기꾼
- 제비 - 반역자

○ 정당 의사수렴 (의사수렴)
 제1등의 의사수렴 → 한국내 p42
 리얼리즘 배려 ↑
 제1등을 민족지배 하라

○ 리얼리즘

제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이종훈
 국회 연구관, 정치학 박사

1. 문제제기

많은 이들이 지적한다. 우리 너무 민족주의적이라고... 그래서, 어떤 이는 민족주의는 이제 반역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너무나 민족주의적인 우리에게 민족주의는 반역이라고 외쳐 그는 사회적 반향을 얻었다. 하지만 난 그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어떤 민족주의를 말하느냐고... 내가 아는 한 모든 민족주의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민족주의의 폐해를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다. 르완다의 종족 분쟁이 낳은 대규모 학살로부터 세르비아 민족주의가 낳은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까지... 그러나, 민족주의가 언제나 이런 잔혹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동 티모르 독립운동도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 운동도 민족주의이다.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해 성전을 치른 식민지 민족해방운동도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안중근 의사도 김구 선생도 모두 민족주의의 이름아래 투쟁하였고 죽어갔다.

해방 45년, 한반도 주변 정세의 무엇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는가? 제국주의로부터 반제국주의로 극적인 전환을 하였는가? 이제 한반도 주변엔 더 이상 제국주의적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들 보다 강대국이 되었는가?

민족주의를 반역이라고 외치고 이에 환호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민족주의의 대안이 무엇이나고... 세계주의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다양한 민족,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거대 민족과 소수 민족이 한데 어울려 사는 다민족 세계 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역할은 무엇인가? 그냥 섞여 사는 것으로 충분한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세계, 거대 민족이 소수 민족을 동화시키는 세계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른바 지구촌이다.

우리 불행하게도 오래 전부터 강대 민족 틈에 끼어 살아야 했다. 그 틈에서 단일 민족국가를 유지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강대국의 한 지방 또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과정이 우리의 역사이다. 외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 우리의 민족주의이다. 그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처럼 공격적이지 않은 방어적인 민족주의였다. 주변의 공격적인 제국주의 틈에서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상황의 기본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 여전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해 국토, 자원, 인구, 기술, 자본

면에서 열세에 놓여 있고, 21세기에도 이들과 경쟁하며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일제 시대의 친일인사, 해방 후의 친미인사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원한다면 독립국가임을 포기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 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대민족이 지배하는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의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린 결코 그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장벽을 뚫으려 애쓰는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가끔 장벽을 뚫고 성공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주류를 형성하기는 어렵다. 주류에 편입되려고 애쓰는 영원한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민족국가란 외투를 벗어 던지고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민족주의를 버리고 세계주의자로 변신해서 국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언제나 코리아인일 뿐이다.

세계주의는 인류의 이상이고, 우리도 당연히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앞서 가면 최후의 보루를 잃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우리의 현실이다. 어쩌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뿌리가 굳긴한 나무에 열매도 잘 맺는다. 민족주의의 현실 곧 불가피성을 인정한 위에 세계주의란 꿈나무를 심어야 한다. 세계주의는 정원에 온갖 꽃이 만발한 상태를 말한다. 각양각색의 꽃이 제 색을 내지만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물론, 그 정원에서도 꽃들은 서로 빛을 많이 받아 번성하려고 경쟁한다. 선의의 경쟁 곧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민족주의만이 존재할 때 세계주의는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팽창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도전으로 평화는 자주 깨어졌음도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한다.

2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려 하자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어 반대하였다. (1)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이 법의 제정은 국제사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로 인식될 것이며 '보편적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상충한다 (2)외국국적을 소지한 재외동포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 법의 제정은 거주국 정부를 자극하여 외교분쟁 유발 가능성이 지대하다 (3)외국국적동포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 법을 시행하면 무차별 원칙에 따라 다른 시민권자, 국적자들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동일한 특혜를 요구하게 될 소지가 크다 (4)재외동포의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거주국에서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재외동포의 기본방향과 상충한다 (5)이런 법의 제정보다는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을 개별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외교부의 논리처럼 혈통주의 입법은 편협한 민족주의일까? 만일 이 논리에 따르면 많은 나라가 편협한 민족주의를 따르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속인주의 국적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성립 배경에 따라 속인주의(혈통주의) 또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를 택하기 마련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개별 국가가 선택할 문제 곧 배타적 관할사항이지 국제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시 말해

속인주의 곧 혈통주의는 국적법의 근거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입법논리이다.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혈통주의에 근거한 국적부여를 전제로 한다. 이런 국제관례를 고려할 때 외교부의 논리는 비약이며 반대를 전제로 개발한 허위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외교부는 더 나아가 이른바 과거 국적주의가 국제 관례라는 논리를 내세워 재외동포법의 개념정의 혈통주의에 근거한 것에서 과거 국적주의에 근거한 것으로 바꾸고 말았다. 물론 외교부가 예시한 아일랜드, 그리스, 폴란드, 터키의 경우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국적동포에게 출입국 등에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국적법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우 식민지 지배로 정체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적법은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언급이 없어 많은 착오를 낳고 있으나, 최초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는 해방 당시 국내외에 거주하던 모든 동포로 보아야 마땅하다. 조선조에도,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도 조선인에게는 국적을 포기할 권리가 없었다. 더욱이 제헌헌법 전문이 명시하고 있듯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한 다시 말해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이다.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엔 내외 동포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므로 과거 국적주의에 따라 재외동포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 '과거 국적'의 취득 시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혈통주의를 버리고 과거 국적주의를 채택한 까닭은 사실 입법논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외교분쟁 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조선족을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의견을 존중하여 재중동포와 재러동포 등을 개념정의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복잡해 질 수 있는 문제를 간단히 해결해 버린 셈이다. 외교부가 내외에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우린 민족주의적이지 않다', '우린 당신 나라와 외교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그것이 재외동포 절반을 잃는 것보다 더 국익에 유리한 것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해외 화교·화인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점을 들어 설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국내로 화살을 돌려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 수정을 가한 셈이다. 국내에서 해결하는 편이 타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가 무엇인지 외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군사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이 외교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도 해명과 설득이 필요했다. 이 법안의 목표가 국내법적 조치에 불과하며, 중국 당국도 이런 정도의 화교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해해 주기 바란다... 취지로...

외교부는 또한 외국인의 동일한 혜택 요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이것이 문제라면 재외동포에 대해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모든 나라가 동일한 처지일텐데,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 우리 정부의 문제인식이 이러하다면 마찬가지로 논리로 중국 정부에 대해 최근 진출한 한국인에 대해 화교와 마찬가지로 대우를 해달라고 문제제기를 할 법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내정간섭의 성격이 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유를 들어 외교부는 국내법의 제정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외교부는 재외동포법 제정 같은 조치가 재외동포의 모국 정부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거주국에서의 자조노력 지원이라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과 상충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 가운데에는 이제까지 정책이 기민정책(漸進政策)이라는 것도 있다. 이보다 강도는 낮지만 현지화 정책 곧 현지동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를 「재외동포들의 혈통, 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사회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는데 두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지역 사회 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점은 거주국 내 융화이다. 융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지만, 재외동포에게 이것은 현지화 또는 동화의 의미로 다가온다. 거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가 현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불가피한 과정이다. 세대가 지남에 따라, 거주국 사회에서 기반을 닦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려 하면 할수록 동화는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로서는 현지화하지 말라고 해도 현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국 정부가 현지화 정책을 펼 이유가 없다. 모국 정부로서는 현지화보다는 가능한 이들이 모국을 잊지 않고 모국에 기여해주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이제까지 우리의 재외동포가 너무 모국 지향적이므로 현지화해야 한다고 말해왔으나, 이것은 재외동포와 재일동포 1세에나 해당하는 말일뿐이다. 재외동포와 재일동포 사회에서 2세 이후 세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재중동포와 재러동포 사회에서 3세와 4세가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말이다.

솔직히 현지화 정책은 정책일 수 없다. 이것은 현지화 과정을 관망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560만 재외동포에 대해 행하는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독일, 이스라엘, 그리스처럼 귀환을 원하는 재외동포를 국내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역이민자에 대한 정착지원도 행하지 않고 있다. 해외 일시체류민의 참정권도 외면하고 있고, 현지 교육문화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재외동포재단을 마지못해 만들었지만 예산은 8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IMF 구제금융 체제의 조기 졸업에 재외동포의 모국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지만 재중동포와 재러동포를 포함한 절반이 넘는 재외동포를 개념정의에서조차 제외시켜 버렸다. 재외동포정책 담당 부서도 재외국민 1과, 2과, 해외이주과를 재외국민이주과 한 개 과로 축소시켜 버렸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에 열의가 없음을, 그 결과 사실상 현지동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을 반증해준다.

외교부는 또한 재외동포법의 제정보다 개별 법률에 재외동포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교부는 그 동안 다양한 개별 법률의 개정으로 재외동포가 요구해온 사항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해소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외교부가 적극 홍보하고 있듯이 체류허가제도 개선, 국내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재외국민의 병역의무 부과 요건 완화 같은 것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하고도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도 기본법 같은 형태로 일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이상에서 검토한 외교부의 논리는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서 그 동안 한번도 변한 적이 없는 논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래 전부터 있어온 교민청 설치, 이중국적 허용, 재외동포재단 설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요구에 이르기까지 같은 논리도 대응해 오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교민청의 대안으로 재외동포재단 설립(안)을 제시했던 필자는 외교부가 당시에 마찬가지 논리로 반대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재외동포재단을 만들기로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토록 반대하던 태도에서 돌변하여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요직을 외교부 출신으로 채우고 이 분야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다. 심지어 재외동포재단법에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 대표자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아직 조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현지 선심성 사업을 주로 대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재외동포재단을 기획하였던 필자가 상정한 거의 최악의 형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외교부의 적극적인 반대에 힘입어 법무부는 애초에 입법예고 하였던 안을 수정하여 외국국적동포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중국 조선족과 독립국가연합 동포는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우리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은 적이 없으므로 법률해석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외동포법이 지닌 문제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외국국적동포에 관한 개념정의 조항으로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3. 재외동포법의 과제

방향은 물론 제외시킨 동포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정의의 도입이다. 이것은 물론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다. 재외동포법 개정은 국회주도로 하거나 정부주도로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정부의 수용태세가 중요한 변수이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이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여론 일각에 존재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과거 재외동포하면 재일동포와 재미동포를 연상하기 마련이었고 이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부유한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재미동포의 경우에는 잘살려고 또는 안보가 불안하므로 모국을 등지고 떠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냐는 여론이 존재한다. 재중동포의 모국 불법체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차별하려는 경향도 존재하고, 고려인의 어려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짐스럽게 여기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들을 과거 공산주의 국가 사람으로, 북한과 가까운 집단으로 인식해서 경계하는 경향도 일부 있다. 세계화가 유행한 이후 일반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별하여 재외동포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식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이 총체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혜택부여나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관료사회 내에도 이

런 경향이 일정부분 자리잡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재외동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먼저, 재외동포에 관한 좀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는 역사적으로나 실리 면에서 우리가 외면해서 안될 이유가 있다. 재외동포 가운데 재일동포, 재미동포 초기 이주집단, 재러동포, 재중동포는 일제 식민지 시대 동안에 발생한 불행한 유이민 집단으로서 항일운동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이들의 후손인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리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당위성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할 점은 우리의 재외동포가 한반도 주변 4강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그 동안 수 차례 강조하였듯이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다. 21세기에든 주변 4강국과 공존과 경쟁이 불가피하고, 우리 나라가 이들 국가에 비해 인구, 국토, 자원, 기술, 자본 어느 것 하나 뛰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은 그나마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인적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주변 4강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솔직히 그들이 싫다고 거부하여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불어 넣어주고 모국을 잊지 않고 모국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일반 국민이나 관료 사회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인의 세계 진출은 증가할 것이다. 뜨거운 영어교육 열풍 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청년 세대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로 진출하여 정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재외동포정책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자 내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의 문제이다.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원한다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는 명확해진다.

재외동포법의 개념정의 부분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반대의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우리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반대의견 제시에 대해 내정간섭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국민 방문 문제와 심양의 영사관 개설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었고, 외교부의 전통적인 반대론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 계기이기도 했던 까닭에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반론제기보다는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내정간섭이라는 반론제기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다. 재외동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다시금 문제제기를 할 확률은 반반이지만, 만일 다시 문제제기를 하면 시민사회단체는 중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것이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교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내정문제임을 들어 중국 측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이 법의 취지가 화교우대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절차를 밟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외동포법의 개념정의 부분 개정 방법으로는 (1)이것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 (2)이 법에서 개념정의 조항을 생략하고 재외동포재단법의 개념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원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을 「한민족 혈통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바꾸는 것이다. (2)의 경우에는 제2조(정의)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정의)를 수정하여 외국국적동포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재외동포법에서 원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 관련 조항의 개정 없이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하여 여기에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더불어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대안은 재외동포법의 폐지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다. 이미 수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현행 재외동포법은 일종의 특례법으로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특례법이면서도 기본법 형태를 띠고 있는 특이한 법률로서 입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재외동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을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제정한 것도 형식논리상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보다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재외동포법은 법무부 소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특별법'의 형태로 대체하여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과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동포법의 개정보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더 나은 이유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일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정책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정책 추진체제이다. 현재 외교부가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재외동포 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온 교민청 설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부 부처의 하나로 이것을 만들기보다는 사실상 교민청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향이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다. 1995년 국무회의 의결로 재외동포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주체로 만든 것이 총리가 주재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다. 그러나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최근 외교부가 회의안건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아예 열리지도 않고 있다. 심지어 재외동포법 제정과정에서도 열리지 않음으로써 실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사무국을 설치하고 실제 집행 기능을 맡긴다면 대만의 교무위원회처럼 활발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총리실에 실제 집행기능을 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재단의 소속도 외교부에서 이 위원회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바로 이러한 정책 추진체제의 정비 문제도 함께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외교부가 제안한 하위 법률의 개폐보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하다.

4. 맺음말 : 재외동포법을 넘어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여야 할까? 물론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다. 그리고 개방적 민족주의의 구현이다. 우리의 민족주의가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앞서 지적하였는데, 너무 방어적인 나머지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 왔음도 지적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너무 폐쇄적인 나머지 혼혈집단이나 재외동포 집단에 대해서도 배타성을 띠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고, 이것은 유교적 가족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겨진다. 좁은 의미의 가족 또는 준가족 성원 외 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배타성을 보이는 사회인 것이다. 일반적인 집단 성격과 별개로 개성이 강한 집단에 대한 배타성도 강하다. 개방적 민족주의는 먼저 민족공동체 내의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의 극복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 같다. 같은 민족성원이지만 이질성이 나타나는 소수집단으로서 재외동포와 혼혈집단을 민족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민족 외래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하여야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민족공동체를 완성할 수 있으며, 개방적 민족주의도 완성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형성론은 역사가 오래지만 사실 이것의 완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남북한의 이질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민집단으로서 재외동포 사회의 현지화에 따른 이질화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는 거주국의 문화 그리고 현지 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영향을 받으며 지난 1세기 동안 독자적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그 결과 거주국 문화에 대한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점차 흐려지고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도 상당하다. 이러한 동질성 상실은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의 결여로 나타난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도 장애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는 거주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결과, 존재양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재일동포와 재중동포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난다. 물론 거주국 내의 사회계층화도 달리 진행되어 직업이나 소득 분포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곧, 재미동포의 미국 사회내 직업이나 소득분포와 재러동포의 그것엔 차이가 존재한다.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한인공동체 내의 세대간 차이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이주 1세와 이주 2세 이후 세대간에 동질성 보존과 현지동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 2 이후엔 동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한민족으로서 동질성을 많이 상실하기 마련이다. 둘째, 이주 연도에 따른 세대간 차이도 있다. 곧, 100여 년 전에 이주한 이들과 최근에 이주한 이들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세대간 차이는 지역단위의 한인공동체 형성조차도 어렵게 만들곤 한다.

각 지역 한인공동체 내의 계층갈등도 지역단위의 한인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잘 사는 동포와 못사는 동포의 한인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수 없고, 각자의 직업에 따른 시각차도 무시할 수 없다.

분단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거주국 정부의 남북한 관계, 이주 당시의 한반도 상황과 각자의 상황 인식, 이주 이후의 경험, 혈연적 연고에 따라 동포 개개인의 분단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이들은 남북한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통일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에는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한을 지지하는 집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집단, 양쪽 모두와 관계를 갖는 집단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남북한 동포간에는 이념면에서는 물론 존재양태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남북한공동체 형성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남북한과 재외동포 사회를 하나로 묶는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난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어떤 동기를 부여하여 이러한 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동기 부여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정서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생각건대, 이제까지 한민족공동체론이 다분히 정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해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서를 강조해서 눈물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실제 생활과 무관하여서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상 직업상 남북한과 관련을 맺는 경우엔 자연스럽게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상 직업상 남북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모국과 관계는 혈연적인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만나서 반갑다는 말을 하고 나면 함께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인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산가족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한번 만나 눈물을 흘리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 서먹한 것이 현실이다.

한민족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려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의 이해관계 접점을 늘려야 한다. 재외동포가 사업상 직업상 모국과 관련을 맺고 이로써 이익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의 경우 거주국 정부와 기업은 현지 한인공동체가 자국과 남북한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남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이를 촉진할 수 있다. 실제로 남한의 경우 그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각 지역 한인공동체의 역할도 함께 성장한 측면이 있다. 남북한간에도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접점을 늘려가야 한다.

재외동포 사회간의 이해관계 점점 증가도 늘려야 한다. 사업상 직업상 다른 지역 한인공동체와 관련을 맺고 이익을 창출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재중동포, 재러동포 사회와 재일동포, 재미동포 사회간에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활발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중동포가 한국은 물론 러시아, 미국,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러한 관계 발전이 큰 기여를 했다. 이로써 한민족공동체 전체의 결속력 강화와 국제적 영향력 증가가 가능해진다.

재외동포법의 개정 또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해관계 점점 증가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 성원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개념정의 수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을 추진할 주체이다.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체의 조직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재외동포 대표자들이 주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아직 이것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민족대표자회의 같은 것이 있지만 아직 응집력이 그다지 높진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남북한 갈등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토양을 만들어 가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강화 곧 재외정책위원회의 활성화 같은 조치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Problems of the Overseas Korean Act and the Future Tasks

Rhee, Jong Hoon
National Assembly, Researcher

1. Introduction

Many people point out that we are too nationalistic ... Perhaps, that is why some one thinks nationalism is a treason. He received a public scrutiny for saying that nationalism is a treason to a too nationalistic people like us. However, I have a question for him. Which nationalism? As far as I know not all nationalisms are negative.

Today, we are seeing the calamities of nationalism in various places of the world. From a mass massacre brought by the ethnic wars in Rwanda to the "ethnic cleansing" in the Balkans by Serbian nationalism. However, nationalism did not always have such a cruel face.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East Timor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ibet led by the Dalai Lama are also the products of nationalism. There are also holy wars of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by the colonial people who resisted the invasions of imperialism. An Jung-geun and Kim Gu, the very people whom we are so proud of, have all died in struggle under the name of nationalism.

Did any fundamental change took place in the political situation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45 years after the liberation? Did the countri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hina, Russia, and Japan, really change? Did they make drastic changes going from imperialism to anti-imperialism? Is it that no imperialistic state exis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day? Or is it that we have become a stronger nation than them?

I have a question to those who cry out that nationalism is a treason. What is the alternative to nationalism ... internationalism? If so, what are our tasks? What is the role of our people in a multi-national society where diverse nations, some strong, some weak, some many, and some few, live together. Is living together enough? A world where a strong nation dominates and discriminates a weaker nation and the majority assimilates the minority is the very world so called the global village which we live in.

Unfortunately, from a long time ago we lived among the strong states. It is a nearly miracle for us to maintain a homogeneous nation-state. Despite many invasions, the efforts and attempts

not to become a minority or a province of a stronger state are our history itself. Our nationalism is that which naturally developed in the process of resisting the foreign challenges. This nationalism is not offensive like imperialism, but is a defensive nationalism. It is a product of fierce struggles to survive amongst the surrounding offensive imperialistic states. Moreover, unfortunately, the situation did not change. We are still disadvantaged in territory, natural resources, population, technology, capital, etc. compare to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In the 21st century, we must still find a way to co-exist while competing with them.

As the pro-Japanese Korean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ro-US Koreans after the liberation have argued, we can give up our independence and become a state of the US, China, Japan, or Russia if we desire. However, the price is the fate of a minority living in a multi-national state dominated by the majority. We can never be the host of that state. We will live out a miserable life trying hard to break the barriers created by visible and invisible discriminations. There will be some who break through the barriers, but they will never form a main stream. They are nothing but an eternal few who tries to become part of the main stream.

The problem is simple if we can achieve happiness without the outer layer called nation-state. There is nothing to it than giving up nationalism and transforming to internationalism to live the life without never having concern about nationality. The problem is that the reality will never permit this. In the real world, we will always be Koreans.

Internationalism is an ideal of humanity and we, too, should seek it. However, if we go too far ahead, we may lose our final stronghold. Nationalism is our reality. Perhaps, it is something we do not like to admit. Nevertheless, a tree with a strong root bears abundant fruits. After accepting the reality of nationalism, the inevitability, we can plant a tree of dream called internationalism on top. Internationalism is like a garden with all kinds of flowers in full bloom. Flowers different in shape and color radiate their individual colors, but the garden is beautiful as a whole Of course, even in that garden, individual flowers compete with each other to receive more light and grow. Good will competition, in other words, inclusive and neutral nationalism, only then, internationalism can be realized. However, we should never forget that a few of expansionist and aggressive nationalisms have disturbed the world peace.

2. The problems of the Overseas Korean Act

At the time of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 ac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reafter the MoFA) raised an opposition with the following rationales. 1) The legislation of this act centered on heredity can be seen as a parochial nationalism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contradicts the policy of the President who values "universal internationalism." 2) The legislation of this act which seeks to have legal jurisdiction over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will provoke the resident country's government most likely to escalate into a diplomatic dispute. 3) If this act giving certain benefits to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should become in effect, in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indiscriminate, other nationalities and citizens may demand equal treatment. Moreover,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it is likely that foreigners may demand equal treatment. 4) It will lead to a high expectation of the mother country's government by the overseas Koreans contradic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which is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efforts for self autonomy in the resident country. 5)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reflect the demands of the overseas Koreans in pre-existing statutes instead of legislating this act.

As the above rationales of the MoFA insist, is the legislation of a heredity centered act a narrow-minded nationalism? If we were to accept this logic, many countries would be following a narrow-minded nationalism. This i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adopted the nationality principle for their nationality law. States chose either the nationality principle (heredity centered), or the territorial principle (place of birth centered) according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Furthermore, this issue is completely the choice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refore, is an exclusive right, a matter which cannot be imposed through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nationality principle or the heredity principle is a legal principle normally accept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basis of nationality law. Even in countries with dual nationality, the heredity principle is presumed in recognizing nationality. Considering such an international custom, the logic of the MoFA is unconvincing as it is nothing more than a fallacy created for the sake of opposing.

In addition, the MoFA have changed the definition of the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heredity principle to the one based on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arguing that it is an international practice. Indeed, it is a fact that Ireland, Greece, Poland, and Turkey, the countries which the MoFA alluded to, grant certain privileges to their expatriates with foreign nationality.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y have adopted heredity centered nationality law and they have not experienced a discontinuity of identity due to colonial rule. Despite the uncertainty resulted from no clear confirmation of the first people with ROK nationality, it would be logical to consider all Koreans liv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abroad at the time of the liberation to be the first bearer of ROK nationality. At the times of Joseon, Imperial Korea (Dachanryeguk),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had no right to renounce their nationality. Furthermore, as the preamble of the First Constitution stipulates, the 1948 Korean government is a government upholding, in other words, succeeding the legality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founded in 1919. Therefore, defining overseas Koreans according to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and determining the time of acquiring the "past nationality" to be 1948, the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historically or legally wrong.

The reason for the adoption of the past nationality principle instead of the heredity principle seems to be, in fact, not a legislative reasoning but a realistic reason of the possibility of diplomatic disputes. In reality, the Chinese government expressed a dissenting opinion on the proposal to include Korean Chinese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and in response to such an opinion, the Korean government redefined the concept of overseas Korean excluding Korean Chinese and Korean Russians altogether. It solved what could be a messy problem in a simple way. The messages which the MoFA wanted to give to domestic and abroad were "we are not nationalistic," and "we do not want any diplomatic dispute with your country." However, one cannot help but to question what we have gained and whether it is worth losing the entire half of the overseas Koreans.

As we all know, China has very positive policies toward overseas Chinese. The MoFA could have pointed out this fact and tried to convince the Chinese government, but, instead, it turned the issue to domestic and revised the Overseas Koreans Ac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deed, it is much more easy to solve the issue domestically than convincing a foreign government. Nevertheless, the question of what diplomacy is remains to be asked to the MoFA. If diplomacy is to resolve different opinions between two countries not by military but peaceful means, the issue should have been dealt with attempts to explain and convince that the intention of the Act is to be a domestic legal measure only and that even the Chinese government practice a similar policy toward overseas Chinese.

The MoFA also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foreigners demanding the same treatment. If this is the case, then every country with policies supporting their expatriates would have the same problems. However, there is no such reported case as yet. If this is our government's reasoning, then it could cross demand to the Chinese government to treat Koreans in China the way it treats to overseas Chinese.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and the reason is that the MoFA thinks such a demand has a strong characteristic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This is a not sense. Nevertheless, the MoFA raised an objection to the legislation of a domestic act with such a nonsense as a reason.

The MoFA pointed out that a measure like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 Act would bring about a high expectation of the mother country's government amongst overseas Koreans which would contradict the basic direction of the self autonomy support policy toward overseas Koreans. One of the extreme criticisms against our government's policies toward overseas Koreans is that the past policies have been deceitful. In a lesser degree, some criticized the policies as an "assimilationist policy." The basic aim of our government's overseas Koreans policies is "to support overseas Koreans within the framework allowed by the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resident countries,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to have stable live and grow as model and respectful members of the resident society considering that heredity, culture, and tradition of

overseas Koreans are rooted Korea." In other words, it will support overseas Korean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sident regions and integrate into the resident society. As we can see from this, the main focus is integration into the resident country. While the word "integration" can be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overseas Koreans consider this word to mean assimilation. Assimilation of overseas Koreans into the resident society is in some sense ordinary and an inevitable process. With coming of new generations, as they create a foothold in the resident country and as they seek to enter into the mainstream society, assimilation is inevitable. In other words, for overseas Koreans, they have no choice but to assimilate even if asked not to.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for the mother country government to have an assimilationist polic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mother country government, it would be more logical for it to support overseas Koreans not to lose their identity in a hope that they will not forget the mother country and contribute to it if possible rather than having an assimilationist policy. The government has so far argued that our overseas Koreans are too mother country oriented, thus, need to be assimilated. However, this applies only to the first generation Korean immigrants in the US or Koreans living in Japan. The statement is inappropriate for Korean American communities and Koreans in Japan with a higher percentage of second and later generations, and for Korean Chinese and Korean Russian communities whos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are now the mainstream.

Frankly, the assimilationist policy cannot be a policy. This is nothing more than standing aside and observing the process of assimilation. In fact, the support of 5.6 million overseas Koreans by our government was very inadequate. It has not welcomed overseas people who wish to repatriate unlike Germany, Israel, and Greece, nor it have any settlement support for reverse immigrants. It is denying the right to absentee ballot to temporary overseas residents. Support of cultural education to the abroad communities is also very much lacking. It has reluctantly established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but its budget is mere 8 billion won. It legislated the Overseas Korean Act recognizing the need to attract overseas Koreans' investment for the early completion of IMF Financial Relief regime. However, it has excluded a half of the total overseas Koreans including Korean Chinese and Korean Russians from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Even the governmental office overseeing the overseas Korean policy was reduce to one division from 3 divisions. Such a series of change shows that our government, particularly the MoFA, has no interest in the overseas Koreans policy. As a result, it has proved in negation that, in fact, it is supporting the assimilationist policy.

In addition, the MoFA has argues that it would be best to reflect the demands of overseas Koreans in the individual statutes and not through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he MoFA also argues that it has satisfied many of the demands through various statutes in the past. This is true. As the MoFA actively promotes, there have been many ameliorations such as the reform of residence permission system, the easement of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Korea, and the conscription exemption conditions, etc. However, many legal experts commented that such changes are inefficient and complex. They adde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measures in a form of a package deal comprehensive law.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the reasoning of the MoFA reviewed so far is very traditional one and has not been changed at all. It has responded to the past demands in a consistent way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allowing dual nationality,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nd to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s a researcher of the Committee to Initiate Globalization who once proposed the proposal to establish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I remember vividly how the MoFA rejected the proposal with the very same reasoning. However, when the decision was finally made to found the foundation, I was stunned to have witnessed how the MoFA made a sudden change of attitude and appointed the former employees of the MoFA in the foundation personnel and in the seat of the board of director excluding a group of experts in the field. Even though the foundation must have an advisory committee composed of outside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overseas Koreans in pursuant to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As a result,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has degenerated into an institution carrying out token gestured activities of the embassies or the consulates. It has turned into the worst form I have imagined as I plann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Going along with the active resistance from the MoFA, the Ministry of Justice revised its draft to define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s "a person with Korean nationality and/or his or her family member with foreign nationality who have been determined by the president" while making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Korean Chinese and overseas Koreans living in the CIS do not apply in a legal interpretative sense since, having migrated befor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y have not been confirmed of being Korean nationals."

3. The Task of the Overseas Korean Act

The task is an introduction of not only a new direction but a new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including the excluded people. This is, of course, possible through an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 amendment can be made by an initi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In either case,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variable. It is a fact that the government has received a strong resistance from NGO's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However, the reason it has withstood despite the strong resistance is the negative public awareness of overseas Koreans.

In the past, overseas Koreans meant Koreans living in Japan or Korean Americans and,

generally, they were more affluent than us.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n Americans, they were thought to be a group who left the mother country for a better life or due to public insecurity. Due to such awareness, there is a public opinion questioning whether there is a need to grant privilege to overseas Koreans when Korea have people in worse condition. As the number of illegal Korean Chinese residents increases, there is a tendency to discriminate against them. As the difficult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s in the former USSR are publicize,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of them as a burden. This is partly due to a thinking that they are people to be cautious since they were in the former communist states close to North Korea. There exists an intellectual group who disapproves to the granting of privileges only to overseas Koreans and not to ordinary foreigners at the time of globalization. As a whole, these kinds of tendencies have contributed to the forming of a negative image on giving privilege or support to overseas Koreans. To certain extent, such an image can be found in the minds of bureaucrats.

How, then, can such a negative awareness be overcome? What are the mean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overseas Koreans? First of all, there must be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overseas Koreans. There are historical and practical reasons why we should not ignore the overseas Koreans. We must first remember that amongst the overseas Koreans, Koreans in Japan, early Korean immigrants to the US, Korean Russians, and Korean Chinese, as unfortunate migrants cre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anti-Japanese movement. We must have interest in them who are the descendants of these people. In a practical aspect, there are numerous reasons why we should be interested. First is the fact that they are residing in the four super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s I have emphasized many times, this is our unique advantage. Considering that it is inevitable for our country to co-exist and compete with the four super powers even in the 21st century, and that we are disadvantaged in population, territory, natural resources, technology, and capital so that our only asset is the human resource, created by a zeal for high education, we can never be indifferent to the overseas Koreans living in the four super powers. Plainly, the situation is that we must instill into them the Korean identity and make them not to forget the mother country and contribute to the mother country even if they reject us. As time goes by, more and more Koreans will go out to the world. This is because our young generations who grew up in an obsessive drive for English education will actively move out and seek to settle in abroad. This is exactly why the overseas Koreans policy is our very problem and the problem of our sons, daughters, grand sons, and grand daughters. If we desire them to live as Koreans and if we realize the condition in which they have to live as Koreans, what must be done in the overseas Koreans policy becomes very clear.

In regards to amending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in the Overseas Korean Act, the issue of how to overcome the op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also one of the tasks. In fact, the MoFA should have made it clear that the Chinese government's opposition is an act of

intervention in the Korean affairs. However, it seems that the MoFA decided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by accepting the opposition in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issues at hand like the President's visit to China at the time, the opening of a consulate in Simyang. Of course, there is another reason which confirmed that traditional position of the MoFA. Thus, it lost the very opportunity to raise the counter argument of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raise another opposition to the initiative for amending the Overseas Koreans Act is 50/50, but if it does, most likely there will be strong protest from NCC's possibly leading to a diplomatic tension. It is unclear how the MoFA will react when this is the case, however, one hopes that it will counter argue to China saying it is an intervention in the Korean domestic affairs while convincing China that the Ac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benevolent overseas Chinese policy.

As for the ways to amend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there are 1) amending the content, and 2) eliminate the definition clause and amend and invoke the definition clause in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In the case of 1), Article 2(2) should be amended to "a person of Korean heredity who have acquired foreign nationality." In the case of 2), Article 2(definition) should be omitted entirely and amend Article 2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Act to positively stipulate the overseas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then invoke the clause in the Overseas Koreans Act. Aside from these two methods, there is a method of renewing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2(2) of the Overseas Koreans Act without any further amendments in include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defini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other alternative which must be considered seriously along with the option of amending the Overseas Koreans Act is abolishing of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legislating the Basic Act of Overseas Koreans (hereafter Basic Act). As I have mentioned many times, the current Overseas Koreans Act is a kind of special act inappropriate to stipulate ordinary circumstance. Despite being a special act, the current act is a peculiar act taking the form of a basic act unfitting for the legislative convention.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act was proposed not by the MoFA, the main administrative body, but by the Ministry of Justice is in itself illogical. Therefore, what is needed is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of Overseas Koreans while changing the current Overseas Koreans Act into a Special Act Concerning the Residency and Immigration of Overseas Korea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the Basic Act to determine the basic dir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and the legal status in a comprehensive dimension and amend or legislate other statutes based on the Basic Act as a follow up.

The reason that the Basic Act is better than the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is that it has an advantage of resolve the problems of overseas Koreans policy and related issues as

a bundle. In the field of overseas Koreans policy, the main issue is the policy enforcement system.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because while the MoFA is the main enforcer of the overseas Koreans policy, it has taken a very passive stance. It is also possible to think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Overseas Koreans, the demand of many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experts from long time. However, it would be less burdensome to create an organization that play the role of the office instead of creating a governmental office. The immediate consideration in this direction is the creation of a executive bureau in the Committee for Overseas Korean Policy. This committee presided by the Prime Minister was formed in 1995 by the decision of the Ministerial Meeting to be the highest decision making body of making overseas Korean policies. However,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is not held in recent days because the MoFA did not call the meeting where the Chief of the Overseas Resident and Consular Affairs Bureau is the executive staff. Even in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Act, the Committee did not meet failing to carry out its function. If this Committee is revitaliz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bureau to carry out its functions, I believe it could serve an active role like its counterpart in Taiwan. If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cannot create a real functionary organ, then an alternative of promoting the committee to a presidential commission should also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is case,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should also be transferred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ssion from the MoFA. Such changes in the policy enforcement system will be resolved with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A legislation of such a basic act instead of amending or abolishing lower statutes proposed by the MoFA is also the recommendation of legal experts.

4. Conclusion : Beyond the Overseas Koreans Act

What should be the ultimate aim of the campaign for the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Of course, it is the formation of global Korean community. Moreover, it is the realization of inclusive nationalism. I have already mentioned that our nationalism is defensive in its characteristic. However, it is too defensive to a point it has a characteristic of being enclosed. Our nationalism is so enclosed that it excludes interracial groups or overseas Koreans. Obviously, our society in general is strongly exclusive against minority groups. I believe this is because we are rooted in the family centered Confucian values. In a narrow sense, our society is strongly exclusive against groups outside the family or semi-family. We also have strong dislikes for groups with strong personality, and therefore, stand out from ordinary groups. Inclusive nationalism first starts with overcoming the exclusivity against minority groups within the global Korean community. By accepting overseas Koreans and interracial people who are different into the community, we can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foreign and different cultures. This must be realized in order to build a global Korean community composed of diverse groups and have

inclusive nationalism.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s not an easy project. Disparity of the North and South and disparity of various overseas Koreans due to their assimilation to the resident countries are serious matters. Each overseas Korean communities have gone through its own development process influenced by the culture and the minority policy of the resident countries. As a result, they have assimilated considerably with the resident culture to the point the congruity with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s disappearing. Disparity among the North and South is also vast. Such losses of congruity are reflected in the lack of the sense of belong to the global Korean Community.

The social and economic differences among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re also one of the barriers. As a result of each Korean community being influenced by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resident country,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their modes of existence. For example,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economic powers of Korean Chinese and Koreans in Japan. There are also differenc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due to diverse patterns of stratification. Obviously, the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Americans in the US is very different from the income distribution of Korean Russians. There would be no need to speak of the difference of economic powe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Generation gap in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s also becoming a barrier. First, there are clear difference in the aspect of preserving congruity and assimil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immigrants. Generally, the second generation would have assimilated very much and have lost the homogeneity of Korean. Second, there is generation gap according to the time of immigration. In other words, there exists a difference among the people who immigrated 100 years ago and the recent immigrants. Such generation gaps make even the formation of Korean community in the regional level difficult.

Stratification within a Korean community in different regions is also an obstacle to the formation of a Korean community. The perspectives on the Korean community among affluent and poor overseas Koreans will not be same. One cannot ignore the difference that arise from different occupation.

The division is also a variable which cannot be ignore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resident country's relations to the North and South,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of immigration, individual situation, experience after the immigration, and personal ties. They display different reactions to the North and South. Although everyone sees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it is hard to find an agreement in the method of reunification. In most cases, they are divided into groups, supporters of South Korea, supporters of North Korea and those who have ties to both. Furthermore, not only ideologically but also in the modes of existence, the North and South

Koreans differ very much. The formation of the North and South Community would not be so easy.

In order to unite North, South and overseas Korean communities into one to create the global Korean community, obstacles examined above must be overcom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template on through what kind of cause we can overcome the difficulties. Such cause can be based on interests or emotions. Concretely, however, it must be both.

If the past attempts to form the global Korean community have placed more emphasis on the emotional part, I believe we need to concentrate more on interest from now on. It is possible to arouse tears by calling on the emotional part,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form a continual relationship without any connection to the real life. Business wise or job wise, one can naturally get interested in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n the case related to the North and South. However, if there is no relationship with the North and South, business wise or job wise,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country is sure to be limited to blood ties. There is nothing more to say nor do after greeting one another. It is a reality even for the North and South relation that whil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re the utmost important agenda, once they meet and shed tears, there is not much else to do together.

In order to make the global Korean community a reality,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nd the mother country must expand their point of contact. Overseas Koreans should be encouraged to form ties with the mother country in business or job related ways and make profit. For the case of overseas Koreans, it is nature for the resident country's government and companies to expect the Korean community to contribute to the resident country and political and econom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romotion of the international statuses of the North and South will stimulate this further. In fact, in the case of South Korea, as its political and economical status increase, the role of overseas Koreans grow together. Substantial exchanges centered o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must be increased.

Social interest among the overseas Korean communities should also be increased.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of profit by building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overseas Korean communities worldwide. In fact, among the communities of Korean Chinese, Korean Russian, Korean American, and Koreans in Japan, there has been an strong development of relationship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For example, such a development of relationship has contributed to the migration of Korean Chinese to not only South Korea but to Russia, the US, and Japan. Through these, the overall increase of the ability to come together and international influence is possible.

Ultimate goal of the amend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ct or the legislation of the Basic Act must be such a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In other words, it must include plans to increase point of contact and interests. Of course, all these are possible only when there

is a presumption that all members of community are in equal relations. The starting point would be the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overseas Korean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is the subject with ability to do this. At a situation where the North and South are in confrontation, the task of organizing such a subject is not easy.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are in a neutral position to take the lead, however, this is not possible yet. For example, there is the Conference of Korean Representatives, but still its influence is weak. Our government can be the leader, but there is the possibility to increase the tension between the North and South. It is desirable for our government to concentrate on creating a firm base for the formation of the global Korean Community with a long term vision instead of leading it from the front. I believe measures like strengthening organizations for overseas Koreans and revitalizing the Committee of Overseas Korean policy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ess of such initiatives.